

서울特別市麻浦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 
審 查 報 告 書

1992. 9.  
總務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出일자 및 提出者 : 1992년 8 월 11일  
麻浦區廳長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9 월 9 일
- 다. 상정일자 : 第11回臨時會 第 1次委員會  
( '92. 9. 18 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要指

( 제안설명자 : 總務課長 金石鳳 )

가. 提案理由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제1동사무소 신  
축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 
변경하고자 함.

나. 主要骨子

○洞事務所 所在地 變更

마포구 공덕동 11-181를 마포구 공  
덕동 29-6로 변경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

( 專門委員 : 金顯基 )

本 改正 條例案은 공덕第1事務所의 동  
청사 신축에 따른 事務所 所在地변경을  
위한 개정으로서 특이 事項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이전하기전 동  
청사 활용 계획

○답변요지(總務課長 金石鳳) : 노인정 신  
축 예정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

서울特別市麻浦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

提出年月日 : 1992年 8 月 11日

提 出 者 : 麻浦區廳長

1. 개정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제1동사무소 신  
축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  
경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동사무소 소재지 변경

-마포구 공덕동11-181를 마포구 공덕  
동29-6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6조

나. 서울特別市麻浦區洞事務所設置條例 第4條

서울特別市麻浦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<별표1>  
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1>중 공덕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  
의 “ 공덕동11-181” 을 “ 공덕동29-6” 으로  
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 
8월24일부터 적용한다.

(다음 「 페이지에 계속 )

新・舊條文對比表

現 行		改 正(案)			
<별표 1> 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<별표 1> 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	
구  분	동사무소 소재지	동사무소 소재지	법  정  전  지  역  관  할	동  정  지  역  관  할	
				동사무소 소재지	동사무소 소재지
마포구	공덕동1동 <u>공덕동11-181</u>			공덕동 105의3을 기점으로 동105의 51을 경유 동118의 1에 이르는 도로 이 동지역	공덕동 29-6